

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성권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채용비위와 관련한 유죄판결의 확정으로 합격·승진 등의 취소가 있는 경우 그 효력의 발생일을 합격·승진한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(안 제63조의7제6항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의 체계 및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.

(전문위원 최 기 도)